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장관 귀하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대학교)의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81423-232: 2003. 2.25.)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2	30,275백만원	1	별지 제1의 2호서식
4. 부속병원 관련	-	-	-	해당사항 없음
계				

- 붙임 : 1.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명지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3년 5월 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 사 홍 창 식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3281호)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3년 5월 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 사 장 현 세 용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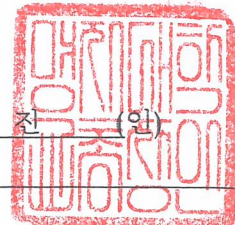


피감사 기관장

2023년 5월 일

명지대학교

총 장 유 병 진 (인)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2022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나,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본잠식과 다수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 지적 사항 없음

2023. 5. .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사 홍정경

감사 김광민

피감사자(입회인)

직명 명지학원 사무국장

성명 유재훈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지적사항 없음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현 세



현 세 (서명)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명지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아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명지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지적 사항

1. 전기와 동일하게, 명지대학교는 유휴부지 등의 매각계약과 관련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6조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582-3 등 15필지의 잔금 21,760백만원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1의 잔금 1,720백만원이 입금이 되지 아니하였음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2. 명지대학교는 생활관과 부속수익시설 및 주차장 일괄책임 임대차관련, 임대보증금 3,000백만원과 동 임대차관련 계약에 의한 3년치 선납 임대료중 3,795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2023. 5. .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 사

감 사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무지원처장

성 명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별지 제1의2호 서식)

명지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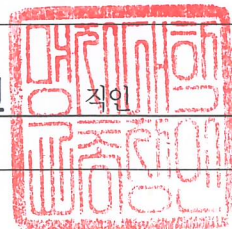
(회계연도 :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1. 전기와 동일하게, 명지대학교는 유휴부지 등의 매각계약과 관련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46조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582-3 등 15필지의 잔금 21,760백만원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1의 잔금 1,720백만원이 입금이 되지 아니하였음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p>	<p>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4.21. 소유권이전등기권자와 가등기권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022카합20637) · 2022.05.30.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 2022.05.3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완료 ○ 본안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7.0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의 소 계속 중
<p>2. 명지대학교는 (주)더원라운지킴퍼니와 ①생활관 일괄책임(마스터리스) 임대차계약, ②부속수익시설 일괄책임(마스터)임대차 계약, ③주차장 일괄책임(마스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임대차보증금 3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동 계약에 의한 3년치 선납임대료중 3,795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음.</p>	<p>명지대학교는 일괄책임(마스터리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며 ①생활관 일괄책임(마스터리스)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특약사항에 질권 설정하여 보험금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지급받도록 함 ②부속수익시설 일괄책임(마스터)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은 일괄책임 임대차 업체에 지속적인 제출요청 중임 ③주차장 일괄책임(마스터)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은 지급보증서에 지급처를 명지대학교로 설정함. 3년치 선납임대료중 3,795백만원은 일괄책임 임대차 업체에 지속적으로 지급요청 중임</p> <p>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통해 보완 조치할 예정임</p>
<p>3. 상기 임대차관련 내부관리제도가 미흡함</p>	<p>상기 임대차관련 내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고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장하여 관련 제 규정(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후생복지시설대여규정)을 2023.05.01.에 개정 시행함</p>

피감사기관장

명지대학교 총장 유병진




(교비회계)

(별지 제1의1호 서식)

명지전문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지적 사항 없음.	
피감사기관장	명지전문대학 총장 권 두 승  (사인)

(교비회계)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명지전문대학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명지전문대학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지적 사항 없음

2023 5 . .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 사

감 사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무처장

성 명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교비회계)